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7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초생활수급자”를 “기초생활수급자, 인턴(군포도시공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)”으로 한다.

[별표 2] 직원 신규채용 시험 가산점수(제5조 관련)

구분	세분	가산점수	비고
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른		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※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종에 한함

제7조제4항 중 “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별지 제4호”를 “별지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“별표 2”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”를 “제5조의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점순위로 하되, 각 과목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의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3]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1차	2차		
부장	본부장		사장	
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<u>사장직속부서(팀장)</u>	<u>실장·부장</u>		<u>사장</u>	
<u>정비사업팀(팀장)</u>	<u>본부장</u>		<u>사장</u>	
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<u>사장직속부서(담당)</u>	<u>팀장</u>	<u>실장·부장</u>	<u>사장</u>	
<u>정비사업팀(담당)</u>	<u>팀장</u>		<u>본부장</u>	

※ 본부장 및 사장직속부서의 부서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 팀의 팀장으로 하고, 확인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.

제3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 팀의 팀장으로 하고, 확인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경영지원부장”을 “시설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문 원 미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

구분	세분	가산점수	비고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 종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개 정 안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시험 가산점수(제5조 관련)

구분	세분	가산점수	비고
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	<u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름</u>		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※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종에 한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장애인, 청년, 한부모 가정, 북한이탈주민, <u>기초생활수급자</u>에 대한 가산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</p>	<p>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기초생활수급자, 인턴(군포도시공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)</u>----- -----.</p>
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험위원과 채용을 위탁받은 기관·업체는 시험업무처리 중 인지도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<u>별지 제3호서식</u>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	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별지 제4호서식</u>”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합격자 결정)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평정표 “<u>별지 제4호 서식</u>”에 의하여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.</p> <p>②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과 “<u>별표 2</u>”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.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</p> <p>③ ~ ⑬ (생략)</p>	<p>제9조(합격자 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별지 제3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5조의</u> <u>가산점수를 합산한 총점순위로</u> <u>하되, 각 과목의 40점 이상 득점</u> <u>한 사람으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⑬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3]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구 분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	1차	2차		
일반직	부장	본부장		사장	
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	미래기획부(팀장)	부장		사장	
	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	미래기획부(담당)	팀장	부장	사장	

※ 본부장 및 미래기획부 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개 정 안

[별표 3]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1차	2차		
부장	본부장		사장	
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사장직속부서(팀장)	실장·부장		사장	
정비사업팀(팀장)	본부장		사장	
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사장직속부서(담당)	팀장	실장·부장	사장	
정비사업팀(담당)	팀장		본부장	

※ 본부장 및 사장직속부서의 부서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평정자와 확인자) ① 경력 평정자는 인사담당 <u>부서의 장</u>으로 하고, 확인자는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5조(훈련성적 평정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 <u>부서의 장</u>으로 하고, 확인자는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으로 한다.</p> <p>제38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으로 하고 <u>경영지원부장과</u> 공사 담당 시청 공무원(팀장 이상)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수, 법무사, 노무사, 세무사, 회계사, 공무원 6급,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4조(평정자와 확인자) ① -----<u>팀의 팀장</u>-----, -----<u>경영기획실장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훈련성적 평정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팀의 팀장</u>-----, -----<u>경영기획실장</u>-----.</p> <p>제38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시설관리본부장</u>으로 <u>하고 경영기획실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[관계 법령]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가유공자법)

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·직급·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